



**일관된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 개정 청원안**

외교통상위원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목차

I. 입법청원안 제안 이유

II. 신구문 대조표

III.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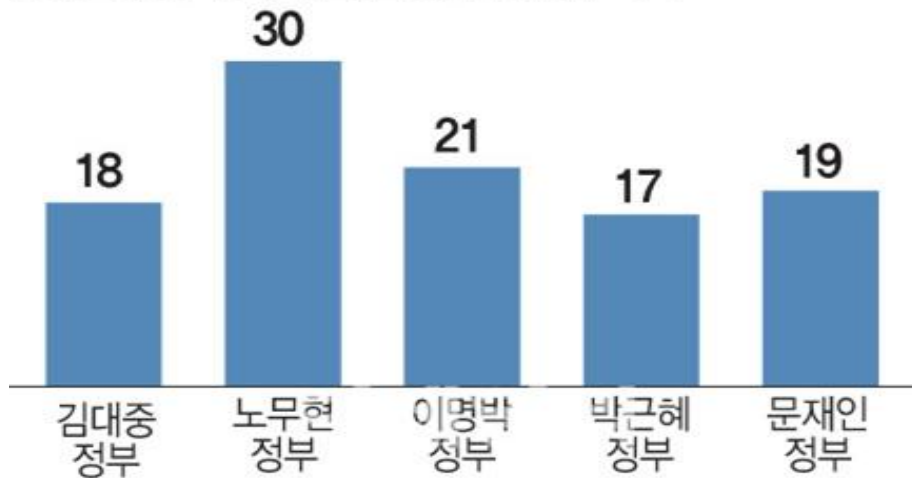
IV. 질의



제안 이유

역대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

단위:개, 임기 말 기준, 문정부는 현재 기준



※ 이전 정부가 힘을 줬던 위원회의 폐지와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을 반복하는 양상



제안 이유

1. 해당 기관의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통일 준비
2. 해당 기관의 주 업무와 목적 달성 실패
3. 해당 기관의 활동 법제화로 인한 시행 강화
4. 급변하는 대외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 가능



현행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개정안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예측 및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제20조(집회)

-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개정안

제20조(집회)

-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1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기대효과



1. 정권 교체에도 통일
관련 자문 체계적으로
유지 가능



2. 통일 과정과 이후의 문제
공식적으로 자문 가능



3. 회의 빈도 증가에
따라 여론 현황 신속히
대처 가능



질문의 응답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외교통상위원회